

이륜자동차 앞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1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1개를 설치하는 경우 앞면안개등의 기준점이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위치하거나 발광면의 끝이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25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상단보다 낮게 설치할 것

3) 길이 방향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앞면안개등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라. 관측각도

1)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앞면안개등이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마.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바. 앞면안개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되지 않을 것

사. 표시장치

앞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아. 작동조건

앞면안개등은 전조등과 독립적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광도는 별표 6의6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